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경제과

(2011. 3.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2월 17일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2월 22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2011. 1. 1 법률 제10219호)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2010. 1. 1 대통령령 제22024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2009. 3. 27 대통령령 제918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기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1) 안 제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2)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추천대상자에 한해 심의회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의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항목 중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항목을 삭제
- (3) 안 제11조의2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공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용자계획의 공고 조항을 신설
- (4)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경영인들이 필요한 때 적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식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상위법에 맞게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정부의 책무) 등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